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70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김영환의원안)	4
2.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김영환의원안, 정부안)	12

I. 개요

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3항)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김영환의원안)

현행	개정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조 제2항제6호 및 별표) ○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6호) <u><단서 신설></u>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가목) -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나목) -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칙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유효기간: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 발생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 입되지 아니한 담배로서 합성니코틴 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간주
--	--

* 김영환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70)

□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1)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9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

1)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DD20457호)을 심사·의결(이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라 함)하였고, 2025년 11월 현재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DD20457호)」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목적	▪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
담배의 정의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제근거 마련	▪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몰수 대상 확대	▪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담배 또는 원료의 몰수 대상 확대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 특례	▪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여 폐업 우려가 있어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 도입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2)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2)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으로 인해 신규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여 폐업할 우려가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특례를 두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2년의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할 예정에 있음.³⁾

또한, 부대의견⁴⁾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담배 정의 확대에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담배사업법」 시행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57호)

부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신청시 제16조제2항제3호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 이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도과시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담배 외에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DD20457호) 부대의견

가.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다. 정부는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한다.

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한편,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 1ml당 약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어, 30ml 액상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약 2만원 수준에서 7만원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단위: 원)

담배종류		부과 기준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개 별 소비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엽연초 부담금	합 계
궐련		20개비	1,007	443	594	841	24.4	5	2,914.4
파이프담배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엽궐련		1그램	103	45	61	85.8	-	-	294.8
각련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전자담배	액상형	1밀리리터	628	276	370	525	1.2*	-	1,800.2
	궐련형	20개비	897	395	529	750	24.4	-	2,595.4
	고형물	1그램	88	39	51	73	24.4	-	275.4
물담배		1그램	715	315	422	1,050.1	-	-	2,502.1
씹는 담배		1그램	364	160	215	34.4	-	-	773.4
머금은 담배		1그램	364	160	215	534.5	-	-	1,273.5
냄새맡는 담배		1그램	26	11	15	21.4	-	-	73.4

주: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기물 부담금은 카트리지 당 24.4원 부과(1개당 1.22원)

자료: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제세부담금 부과에 따른 과도한 가격 상승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의 생계에 즉각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감세율을 50%로 적용⁵⁾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위한 부칙과 그 시행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종류별로 합성니코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별표) 개정안]

1. 쉼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쉼련제조기를 이용하여 쉼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쉼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쉼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5) 제429회 기획재정소위 제3차(2025.9.22.)

- 정부는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감면 수준을 논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50% 이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정할 사항이지만,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동의한 바 있음.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은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다음으로,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자, 수입업자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출고하였으나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보유한 합성니코틴을 가격이 인상된 다음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도 마련하였음.

□ 개정안은 담배 정의의 확대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의 생계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담배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와 세율 경감을 병행함으로써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가격 급등 및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세율 경감을 통해 산업의 안정적인 과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신규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추진에 관한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개별소비세 등에 관한
감면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2.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김영환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환급(제20조의3) ☐ 공제·환급 사유(제3항) -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제1호) -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u>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제2호)</u> -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제3호)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제4호)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u>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2026년 4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

* 김영환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7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2)

☐ 「지방세법」 제55조⁶⁾에서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⁷⁾

6)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서는 해당 신고와 함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품질불량·판매부진 등에 따른 폐기 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를 다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으로 반입한 후 세액을 공제·환급 받고 폐기장소로 이동시켜야 함.⁸⁾

□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폐기하려면 폐기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

7)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통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8)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건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 담배를 굳이 다시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폐기 여부의 확인·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또한, 폐기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였다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참고로, 「지방세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품질불량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폐기 장소로 이동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음.

[담배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사유]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지방세법(제63조)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1. (좌 동)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 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 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u>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u>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3. (좌 동)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지방세법(제63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러나,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으로는 담배소비세와 달리,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받기 위해 여전히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 폐기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담배에 대해 세목별로 상이한 절차를 적용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또한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